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1,500억원(은행 협약자금) ※ 하반기 800억원 예정
- 취급은행 : 시중 은행 12개사
 -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산업은행, SC제일은행
- 지원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 추가 지원

2 지원 및 제외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 ⑨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4 지원 결정

-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5 기타 사항

-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용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용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붙임 1**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제조업 코드(10 ~ 34)**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식료품 제조업	10
○ 음료 제조업	11
○ 담배 제조업	12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 1차 금속 제조업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전기장비 제조업	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가구 제조업	32
○ 기타 제품 제조업	3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

붙임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범위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도로화물 운송업	493
○ 해상 운송업	501
○ 항공 운송업	51
○ 화물 취급업	5294
○ 보관 및 창고업	5210
○ 물류터미널 운영업	52913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함)	381 (39009)
○ 폐기물 처리업	382
○ 폐수 처리업	37012
○ 컨테이너 임대업	76190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20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	72

지식서비스업체(제6조제1항제5호가목 관련)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82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 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 대행업	7131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 경영 컨설팅업	71531
○ 제품 디자인업	73202
○ 시각 디자인업	73203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32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붙임 4

공장등록증 대체 서류

가. 기본 제출서류

공통사항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제조업	공장 등록업체	공장등록증	
	공장 미등록업체	500㎡ 이하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또는 제조)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
		500㎡ 이상	신청 불가

나. 제조업 공장등록 대체 가능 업종 증빙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자동차정비업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허가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인쇄사, 양곡가공, 인삼제조, 사료제조, 비료생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계량기 제조업, 물질제조,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재활용, 먹는샘물, 건강기능식품, 의지보조기구, 골재채취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폐차업, 수산물가공업

다. 서비스업 공장등록 대체 제출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사업장 사진 4장 (상호노출 사진 포함)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사업관련 등록증, 인허가증 또는 관련 계약서 및 매출증빙서류	